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2008. 4. 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건 명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8. 3. 20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추경예산(안)

예산규모 ————— 당초예산대비 0.3%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 고
합 계	303,822	302,882	940	0.3%
일반회계	257,772	256,832	940	0.4%
특별회계	46,050	46,050	0	
의료급여	308	308	0	
주민소득	1,375	1,375	0	
주 차 장	43,043	43,043	0	
기반시설	1,324	1,324	0	

추경재원(특별교부세)

- 재정인센티브 ----- 440백만원
 - 지방행정혁신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 180
 - 주민생활서비스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 200
 -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 60
- 특별지원금 ----- 500백만원
 - 재해예방 특별지원(펌프장 개수) ----- 500

■ 주요내역 _____ **940백만원**

● 행정위원회 소관 _____ 12건 240백만원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_____ 16건 700백만원

■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200백만원**

- 문화관광 중장기계획 용역 등 사업비 180

○ 문화·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40

○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서 발간 등 20

○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관 박람회 등 45

○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서버용량 증설 21

○ 주민센터 서비스평가 포상 및 사무실환경 개선 등 32

○ 자원봉사 교육·홍보 및 운영 22

- 주민서비스 유공직원 격려 20

■ 재해예방사업 ----- **500백만원**

- 양평2빛물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500

검 토 의 견

-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6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는 - 14건(사업)에 1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1백2십4만원)
 - 주민서비스 종합계획서 발간 등 (2천만원)
 - 주민박람회 개최 홍보물 제작 등 (4천5백만원)
 - 주민박람회 관련 간담회비 (1백만원)
 - 주민생활서비스 유공공무원 격려 등 (2천5백만원)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서버 용량 증설 등 (2천1백3십3만원)
 -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상 (2백7십만원)
 - 자원봉사자 워크숍 (5백만원)
 - 마일리지 적립통장 등 (5백3십7만원)
 -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 (6백만원)
 -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카메라 구입 (5백2십8만원)
 - 차량유지비 (1백6십8만원)
 - 봉사활동 기 (2백4십만원)
 - 사무실 환경개선 (8백만원)

- **문화체육과는 - 1건(사업)에**

-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 문화·관광·체육분야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 **치수방재과는 - 1건(사업)에**

-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용은**

- 빗물펌프장 노후모터 펌프 교체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지방행정혁신, 주민생활서비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등이 2007년 연말에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불용된 특별교부세 사업비 인바, 해당 교부기관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4. 1.

보고자: 이 남 식